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백혈병

직업성 암 ⑤

- 서울고법 1995. 7. 13. 선고, 94구3225 판결
-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 판결
1988. 2. 23. 선고, 87누81 판결

판결요지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기존에 발병한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판결이유

1. 사건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박정규는 1965. 9.경 교도보의 직급으

로 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목포시, 순천시 등에서 근무해 오다가 1991. 8. 8.부터는 순천시의 세무과 세정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92. 12. 30.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던 바. 피고는 1993. 7. 8. 위 망인의 근무

여건 및 근무 내용에 비추어 위 사인이 된 백혈병을 발생케 할 만한 소인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백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지속적으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한다는 주문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위와 같이 1991. 8. 8. 순천시의 세무과 세정계장으로 전모된 이후 매일시금 고 및 시중은행 등 30개소의 수납 대행기관에 수납된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관한 영수필 통지서를 위 수납 대행 기관으로부터 일괄 수합하여 이를 수납 대행기관별로 검산 작업하고, 세목별, 동별, 고지서별로 분류하여 집계표를 작성하는 외에 소인 작업, 제세수입금의 총괄관리, 과오납금 처리 등 세무과의 주무계장으로서의 일을 해 왔는데, 위 업무량이 과중하여 매일 평균 3~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각 월말 및 분기말에는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철야 근무를 하여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위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평소 건강하던 위 망인에게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고, 가사 위 백혈병이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위 백혈병이 악화되어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사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나온 각 증거들 및 갑제4호증의 4, 6, 15
내지 78,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신의 증언 및 이 병원의 서울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
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39. 5. 30.생으로서 1965.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도보의 직급으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전라남도청과 목포시 및 순천시 등에서 행정서 기보, 행정주사 등의 직급으로 근무해 오다가 1970. 7. 1. 지방행정 사무관(5급) 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하여 순천시 산하 공영개발사업소 관리 계장을 거쳐 1991. 8.부터 순천시의 세무과 세정계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해 왔다.

(2) 그런데 위 망인은 위 세정계장으로 전보된 이후 세무과의 주무계장으로서 세무과내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매일 시금고 및 시중은행 등 30개 소의 수납 대행기관에 수납된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관한 영수필 통지서를 위 수납 대행기관으로부터 일괄 수납하여 이를 수납 대행기관별로 검산 작업하고, 세목별, 동별, 고지서별로 분류하여 집계표를 작성하는 외에 1일 800여건의 영수필 통지서에 대한 소인 작업을 해 왔는데, 특히 위 소인 작업은 시에 비치된 장부와 은행으로부터 수합한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소인을 하는 업무로서 일단 소인이 찍히면 지방세를 수납받는 결과와 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까닭에 위 망인 스스로 일일이 소인작업을 하였으며, 그 밖에 제세수입금의 총괄 관리, 과오납금 처리 등의 일을 해 왔는바, 평소에도 그 업무량이 과중하여 매일 평균 3~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각 월말 및 분기말에는 처리하여야 할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표 작성 건수와 소인 건수가 급증하여 철야 근무를 해 옥으로써 과로

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3) 그러던 중 위 망인은 1992. 11. 7.경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갑자기 허리 부근의 통증으로 조퇴한 뒤 증상이 심하여 같은 달 9. 서울 시내 원자력 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고 다시 같은 달 10. 11.에 일시 출근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같은 달 12.부터 위 원자력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진찰한 결과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다시 같은 달 26.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진찰한 결과도 백혈병 및 척추결핵의증으로 진단되어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해 12. 30. 백혈병을 주된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4) 위 망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88년의 정기건강진단시에 일시적으로 폐결핵의증이라는 진단이 나온 바가 있을 뿐 1990년과 1992년의 정기건강진단시에는 정상 판정이 나오는 등 평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가 1992. 8.말경(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하기 시작한 1992. 11. 26.경 으로부터 약 3개월전)부터 고열과 식은땀을 동반한 경부통을 가끔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무렵 급성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에도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위와 같이 계속하여 순천시 세무과의 세무계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같은 해 11.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해 12. 30.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5) 의학적으로 백혈병은 그 확실한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방사선 조사, 유기용매와의 접촉, 바이러스 감염 및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인 인자 등이 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고, 병의 발생을 예측케 하는 특이 증세 없이 급속하게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서, 과로가 직접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일단 발병한 백혈병이 과로로 인하여 악화

될 가능성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적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고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81판결,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인 백혈병이 직접 위 망인의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위 망인에게 1992. 8.말경 일단 발병한 백혈병이 위 망인의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